#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 호 3047 발의연월일: 2025년 2월 일

발 의 자 : 임 희 도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뿐만 아니라 원안의결된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변경하려 할 때, 소 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게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예비심 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 2. 주요내용

예결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와 사전 협의를 해야함(안 제71조제4항)

# 3. 검토의견

## 가. 입법 필요성

- 본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"예결위")가 상임위 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는 경우,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.
- 현재 규칙에 따르면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만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의 전문적인 예비

심사가 예결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제기되어 왔음.

#### 나. 입법 적정성

- 본 개정안은 의회 내부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,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심의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.
-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존중하고, 예결 위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상호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단됨.
- 다만, 본 개정안이 예결위의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예산 조 정 권한을 제약하고, 사전 협의 과정에서 예산 심의를 지연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- 그러나, 현행「하남시의회 회의규칙」제71조 제5항에 '협의요 청을 받은 상임위원회는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 전까지 그 결 과를 예결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통 지가 없거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결위의 안 에 따른다'라고 규정되어 있는바,
- 최종적인 예산 심사 및 결정 권한은 여전히 예결위가 가지 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예결위의 심사 독립성과 자율 성이 침해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
- 또한 예산안 조정 전까지로 협의 시한을 제한하여 예산 심 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임.

#### 다. 법적 타당성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 며, 따라서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회의에 관하 여 회의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으므로 입법 타당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라. 결론

○ 본 개정안은 예결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, 예산 변경 시 상임위원회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조치로서 그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되고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

#### [참고자료] 타 지자체 조례 비교

연 번	자치단체명	예결위원회의 예산 변경 시 협의(동의) 규정
1	서울특별시의회	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동의
2	경기도의회	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시 동의
3	광주시의회	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때 동의
4	남양주시의회	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 할 경우에 협의
5	금산군의회	예비심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협의
6	하남시의회(현행)	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협의
7	하남시의회(개정안)	예비심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협의